

	VISION	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(PM) 도로교통법 변경 사항 안내	송우통신
	생각키움 · 마음올림 · 꿈자람 교육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		2020. 12. 21. 교무실: 543-1311 행정실: 542-1584 담당자: 교사 김태환

안녕하십니까? 송우초등학교 학생과 보호자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.

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되어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으나,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학생안전을 우려하여 학생안전을 강화한 개정안이 **국회 본회의에서 의결('20.12.9.)되어 면허증이 있어야만 탈 수 있도록 재개정 시행(2021년 4월 시행)**한다고 하오니 학부모님께서서는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(PM)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개인형 이동장치(PM) 관련 적용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

구 분	현행 도로교통법	개정 도로교통법 (제17371호)	再 개정 도로교통법 (국회 심의 중)	
시행일	시행 중	'20. 12. 10.	공포 후 4월	
운전면허	원동기면허 이상	×	○ 원동기면허 이상 ※ PM면허 신설 예정	
무면허 운전 처벌	○ (30만원 ↓)	×	○ (20만원 ↓ 범칙금)	
어린이 운전금지	×		○	
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	×	×	○ (20만원 ↓ 과태료)	
운전자주의의무	동승자 탑승금지	×	○	
	처벌	×	○ (20만원 ↓ 범칙금)	
	안전모 착용	○ (오토바이용 안전모)		○ (자전거용 안전모)
	처벌	○ (20만원 ↓ 범칙금)	×	○ (20만원 ↓ 범칙금)
	등화장치 작동	○		○
	처벌	○ (20만원 ↓ 범칙금)	×	○ (20만원 ↓ 범칙금)
	과로·약물 등 운전	○		○
처벌	○ (약물: 3년 ↓·1천만원 ↓, 과로: 30만원 ↓)	×	○ (20만원 ↓ 범칙금)	
주요 처벌 조항	음주운전 (단순음주)	1년 ↓ 500만원 ↓	범칙금 3만원	
	신호 위반/중앙선 침범/ 보도주행/보행자보호위반	범칙금 4만원	범칙금 3만원	
	지정차로 위반 (상위차로 통행)	범칙금 2만원	범칙금 1만원	

※ 자료출처 : 경찰청 보도 참고자료('20.12.9.)

2020. 12. 21.

송 우 초 등 학 교 장